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5-5호
2025. 1. 17.(금)

차 례

고 시(2)

-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간연장 허가 고시(고시 제2025-5호) 1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5-6호) 2

공 고(3)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5-80호) 3
- 2025년도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공고 제2025-89호) 5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5-93호) 6

행정예고(1)

- 대덕구 평생학습원 안산도서관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25-100호) 8

공 략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5-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피허가자	소재지	지목	변경허가 내용			
				목적	점용면적 (㎡)	허가 기간	
						당초	변경
2020-01호 (2020.1.30.)	대덕구청장 (비래동장)	비래동 239-1	구거	경작	281.78	'20.01.30.~ '24.12.31.	'25.01.01.~ '29.12.31.

끝.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오정동 99-3, 99-4	한밭대로1006 번길 91 (오정동)	건물신축	한밭대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10,0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5. 1. 17.
비래동 125-31, 125-24	비래동로7번길 13 (비래동)	건물신축	비래동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5. 1. 17.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6)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5. 1. 17. ~ 2025. 2. 3.(18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3. 공고내용

업종	업소명	위반자명	소재지 주소	위반사항	처분 내용
휴게음식점	카페봄봄	허○연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37번길 31, 1층 (오정동)	2023년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100,000원

4. 고지사항

가. 1) 공고기간 경과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의견제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덕구 위생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실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위 공고 대상자는 대덕구 위생과 위생관리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내지 않으시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대전 대덕구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 - 6903.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89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 및 제111조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조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일반명단	라벨용명단	전산자료 복사본
일반용지(A4) 1매 60원	라벨용지(A4) 1매 240원	$(800\text{원} \times \text{CD개수}) + (25\text{원} \times \text{면수})$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93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 하였으나, 미배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소 폐쇄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4.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위반사항	처분 내용
식품제조·가공업	주식회사해수연	박○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334, A동 1층(신탄진동)	영업시설 멸실	영업장 폐쇄
식품제조·가공업	주식회사다인식품	김○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102번길 17, 1층(오정동)	영업시설 멸실	영업장 폐쇄

5. 공고기간: 2025. 1. 17. ~ 2025. 2. 4.(19일간)
6. 청문일시: 2025. 2. 4.(화) 10:00~18:00
7. 청문장소: 대덕구청 와글와글광장
8.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4일 청문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영업소 폐쇄 처리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식품유통팀 ☎(042)608 - 6962. 끝.

대덕구 안산도서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대덕구 안산도서관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원 안산도서관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히 대응코자 함

4. 설치장소: 대덕구 안산도서관 건물외벽 및 도서관 내부, 【첨부1】 참조

5. 촬영범위 및 시간: CCTV설치 구역 반경 50m, 24시간 연속 촬영

6. 예고기간: 2025. 1. 17. ~ 2025. 2. 5.(20일간)

7.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

8.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5. 2. 5.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첨부2】 참조

- 제출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5(안산도서관)
대덕구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 042-608-5562 fax 042-608-3862)

